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97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김선교·하영제·이철규

윤창현 · 김예지 · 이종배

권성동・김석기・구자근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해양치유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내부 임직원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밀유지의무)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4조의2(비밀유지의무) 제33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5조(벌칙)